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642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유미, 곽형규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유상호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25.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1757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0 31. 19:00경 경남 함양군 D를 안의면 방면에서 서하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유정 농로 앞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도로가 좁아 한 번에 진입하지 못하고 삼거리 교차로 내에 반대편 차로의 진행차로를 막고 역방향으로 주차하였고, 서상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및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306,000원을 제외한 1,224,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E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의뢰하였고, 소심의위원회는 2020. 3. 2.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5%,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65%로 정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재심의위원회는 2020. 4. 20.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6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정하는 내용의 재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재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20. 5. 4. 원고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734,400원[=

(총 손해액 1,530,000원 - 자기부담금 306,000원) × 60%]을 지급한 다음 2020. 5.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비좁아 화물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웠으므로 반대 차선 진행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진입하지 못해 정차하였다면 안전조치(비상등 점등 등)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시골이라 원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 불빛 외에는 식별이 어려웠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가까이 갔을 때 마침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과 진행방향 전방 피고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의 도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피고 차량의 불빛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동거리 등을 참작할 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차량 과실이 원고 차량 과실보다 크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73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60%이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1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와 교차로 주정차금지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원고 차량 35%, 피고 차량 65%로 봄이 타당하다.

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도로가 좁아 좌회전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빠져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어두운 농로 앞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가까이 갔을 때 마침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과 진행방향 전방 피고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의 도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전조등 불빛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피고 차량이 역방향으로 주차 중인 상태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차선을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있었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지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확인하는 순간 충돌을 피하려고 운전 방향을 틀었으나 승객의 안전이나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③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 차량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감속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관련 법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가 보험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의 책임액(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535,500원[총 손해액 1,530,000원(= 피고 지급 보험금 1,224,000원 + 자기부담금 306,000원) ×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35%]에서 피고의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6,000원을 공제한 229,5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04,900원(= 원고가 기지급한 금액 734,400원 - 229,5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4,9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피고가 구상금을 수령한 것은 E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악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명, 판사 오영두, 판사 김상현